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454호 2020년 7월 23일(목)

경 상 북 도

■ 고 시

○ 봉화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33호) ····· 6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영주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34호) ····· 19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34-1호) ····· 26

■ 공 고

○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06호) ····· 30

○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07호) ····· 31

○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08호) ····· 32

○ 박물관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고시 제2020-1411호) ····· 33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15호) ····· 34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16호) ····· 38

○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17호) ····· 50

○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18호) ····· 60

시 군

■ 고 시

○ 경주 효동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0-210호) ····· 69

○ 영천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최무선과학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20-156호) ····· 71

■ 공 고

○ 보상계획 열람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0-1368호) ····· 74

○ 보상계획 열람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0-1369호) ····· 80

○ 안동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 공사완료 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0-1400호) ····· 85

○ 영양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영양군 공고 제2020-579호) ····· 87

기 타

■ 공 고

○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0-4호) ····· 94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0-55호) ····· 104

■ 지시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 107

◈◈◈

경상북도 고시 제 2020 - 233 호

봉화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의거 봉화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봉화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농공단지 일반현황

가. 농공단지 개요

- 명 칭 : 봉화2농공단지
- 위 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357-2번지 일원
- 면 적 : 137,456㎡
- 사업시행자 : 봉화군수

- 시행방법 : 공영개발
- 시행기간 : 1997.11.11.~ 1998.12.10(준공된 산업단지)
- 관리기관 : 봉화군

나. 조성목적

-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의 균형 개발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다. 추진경위

- 1996. 12. 5 : 지정승인
- 1996. 12. 28 : 지정고시
- 1997. 8. 28 : 실시계획승인 고시
- 1997. 11. 11 : 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 착공
- 1998. 5. 29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 1998. 12. 10 : 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 준공
- 1999. 2. 25 :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 2011. 6. 27 :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2011. 7. 11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 2019. 8. 8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 2019. 9. 19 : 농공단지 개발계획 결정(변경) 승인
- 2019. 10. 10 : 농공단지 실시계획 결정(변경) 승인
- 2019. 10. 10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 2019. 11. 7 : 농공단지 실시계획 결정(변경) 승인

• 2019. 11. 7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라. 분양현황

(단위:㎡)

공 단 명	총면적	분 양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 분 양				
			입주상담	기타	소계		
봉화2농공단지	137,456	110,703	-		-		봉화군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계	16	-	16	110,703	-	110,703
2020. 6월 현재	16	-	16	110,703	-	110,703

바. 입지여건

시설명		시 설 현 황
교통	철도	○ 봉화역(태백선) : 5km ○ 거촌역(태백선) : 1km
	도로	○ 중앙고속도로 : 28km(장수IC ~ 단지) ○ 신설 국도36호선 : 0.1km ○ 지방도 918호 : 0.2km
용 수		○ 시설용량

(단위 : ㎥/일)

구 분	시설용량	비 고
계	600	
공업용수	500	
생활용수	100	

※ 농공단지 평균사용량 411㎥/일

<table>
<tr><th>시설명</th><th>시 설 현 황</th></tr>
<tr><td>전 력</td><td>○ 시설용량
(단위 : KV/시간)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시 설 용 량</th></tr>
<tr><th>변전소명</th><th>시설용량</th><th>가용출력</th></tr>
<tr><td>산업전력</td><td>봉화변전소</td><td>22.9</td><td>22.9</td></tr>
</table>
※ 평균사용량 10.0KV/시간</td></tr>
<tr><td>통 신</td><td>○ 시설용량
(단위 : 회선/일)
<table>
<tr><th>국 명</th><th>시설명</th><th>시설수</th><th>가입자수</th></tr>
<tr><td>봉화전화국</td><td>TDXIAIBRSS</td><td>20,344</td><td>17,473</td></tr>
</table></td></tr>
<tr><td>단지내 도로</td><td>○ 단지내 도로
(단위 : m)
<table>
<tr><th>구분</th><th>조</th><th>연장거리</th><th>전폭</th></tr>
<tr><td>간선도로</td><td>1</td><td>76</td><td>15.0</td></tr>
<tr><td>지선도로</td><td>5</td><td>872</td><td>12.0</td></tr>
</table></td></tr>
<tr><td>하수도 시설</td><td>○ 농공단지 오,폐수관로
<table>
<tr><th>구분</th><th>차집관거</th><th>처리용량</th><th>처리방식</th></tr>
<tr><td>1</td><td>오폐수(VR관) ∅400m/m
L=1,261m</td><td>입주계약 완료 후
오폐수량 산정</td><td>개별 공장 오수방지시설
처리후 방류</td></tr>
</table>
※ 계획 최대 오수량 :별도계획

○ 우수관로
<table>
<tr><th>구조</th><th>물량</th><th>비 고</th></tr>
<tr><td>BOX</td><td>､1.0×1.0 ､L=48m</td><td>､단지외곽 및 단지내집수관로</td></tr>
<tr><td>파형강관</td><td>､L=903m</td><td>､단지배수와 간선도로 연결</td></tr>
<tr><td>개거</td><td>､1.0×1.0 ､L=80m</td><td>､단지내 배수</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시설명</th><th>시 설 현 황</th></tr>
<tr><td rowspan="2">폐기물
처리
시설</td><td>○ 발생량 추정
<table>
<tr><th>구 분</th><th>발생량(톤/일)</th><th>비 고</th></tr>
<tr><td>계</td><td>3.23</td><td></td></tr>
<tr><td>일반폐기물</td><td>2.54</td><td></td></tr>
<tr><td>특정폐기물</td><td>0.69</td><td></td></tr>
</table></td></tr>
<tr><td>○ 처리계획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처 리 계 획</th></tr>
<tr><th>위탁</th><th>재활용</th><th>매립소각</th></tr>
<tr><td>계</td><td>0.69</td><td></td><td>2.54</td></tr>
<tr><td>일반폐기물</td><td></td><td></td><td>2.54</td></tr>
<tr><td>특정폐기물</td><td>0.69</td><td></td><td></td></tr>
</table>
※ 전체매립용량 : 510,000㎥⇒유곡매립장
※ 일반폐기물은 행정기관(봉화읍)에서 수거처리</td></tr>
<tr><td>시설
녹지</td><td>○ 조경 1식</td></tr>
</table>

2. 관리기본방향

- 지역의 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주민 고용으로 농외소득 증대
- 노사 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조기 정착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면적(㎡)	137,456	110,703	2,620	18,165	5,968
비율(%)	100.0	80.5	1.9	13.3	4.3

(2)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표2 참조

나. 입주관리계획(변경)

(1) 입주대상업종(변경)

- 음,식료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비금속원료 재생업
- 기타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금회 정부양곡창고에 한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2) 입주자격

-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일 것
- 별표1 입주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

(3) 입주우선순위

-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큰 기업

- 재무구조가 건실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수출업체를 우선 입주
-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업체

(4) 사후관리계획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의 원활한,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기술 지도,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
-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방지도활동 강화

다.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1) 배치계획

구 분 / 업 종 별	변경 전		변경 후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계	16	110,703	16	110,703
음식료품	5	36,283	3	28,791
음식료품,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2	7,492
비금속광물	3	31,664	3	31,664
전기장비	1	6,401	–	–
비금속원료재생	1	15,849	1	15,849
섬유제품	1	1,721	2	8,122
기타	5	18,785	5	18,785

(2)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표3 참조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기본방향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및 공공업무, 편익 시설의 공간 제공

(2) 설치운영계획

(단위:㎡)

시 설 명	시설수	면적(㎡)	비 고
계	1	2,620	
오,폐수처리장	-	-	
근린생활 및 기타지원시설	1	2,620	

(3) 기타사항

① 공동이용 건축물

- 용도 : 단지를 위한 편입, 후생복지시설 부지로 이용
- 개발시기 : 업체입주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상태에 따라 검토 결정
- 유치계획 :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 및 회의실 판매장 등

② 폐기물 처리

- 발생량 추정 : 일반 2.54톤, 특정 0.69톤
- 처리계획
  - 일반폐기물 : 봉화읍
  - 특정폐기물 : 전문 폐기물 처리기관에 위탁 처리

마.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지역 기능인력 육성 및 인력수급 계획

① 기능인력 육성

- 노,사 해외연수
- 노,사 관계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협조 방안 강구
- 유관기관 단체와의 노사문제 대책 협조 체제 구축
- 종업원에 대한 기술 연수알선 및 교육비 보조

• 직종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직업 훈련원 위탁 교육

② 인력수급 계획

• 외국인 근로자 확대지원 강구(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

• 취업 상담실 운영

• 유휴 인력(주부,고령자) 활용방안 강구

• 인근지역 인력 수급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2)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생 산 및 수출증대	○ 연도별 · 품목별 생산 · 수출계획 수립 ○ 생산 · 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 · 설명회등 개최 ○ 품목별 · 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 · 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 개발지원사업	○ 공장자동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경쟁력 강화	○ 업체간 상호정보교환 및 제품 판매지원 ○ 업종별 · 품목별 공동브랜드 개발 ○ 물류공동화 추진 및 시설지원 ○ 공동전시 · 판매장 설치

(3) 공동시설 부담금 징수 및 사용계획

① 부담금 징수

• 공동부담금 징수는 군수가 한다. (단,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운영시는 협의회에 이관한다.)

- 공공 및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도로,상.하수도,가로등,폐기물처리,복지시설,기타,공공시설등)
- 도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징수
-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징수에 관한 기준 및 사용계획을 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공공 및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비는 운영상황에 따라 분할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계획

- 공공 및 공동시설 유지관리
- 기타 공공 및 공동시설 유지관리

4. 지형도면 고시 : 붙임 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5.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054-679-62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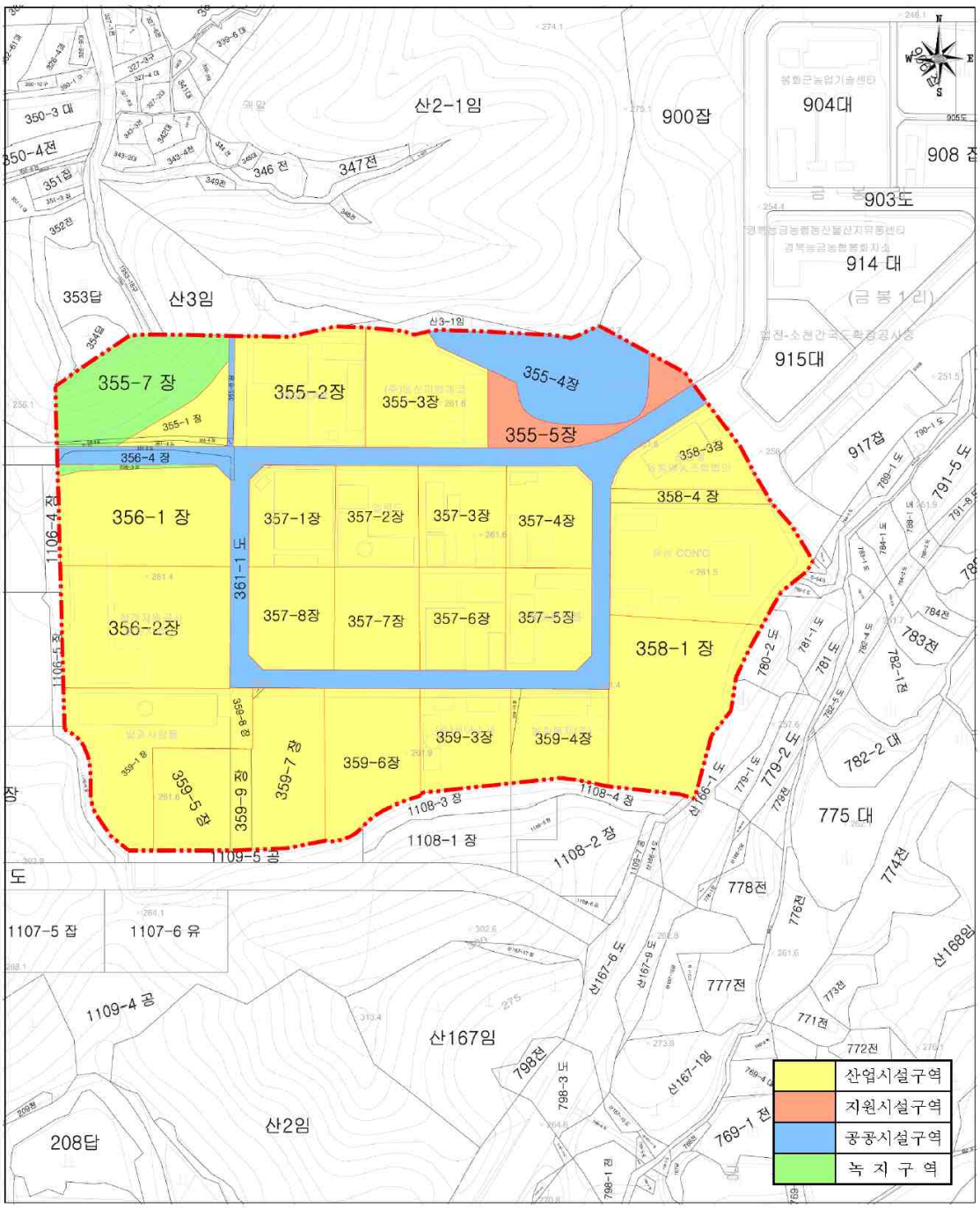
【별표 1】

입 주 대 상 업 종

'20. 6. 현재				향 후 계 획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업체수	면 적 (㎡)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입 주 업 종 중 제 외 업 종
계		16	155,108	계	(산업소분류)
당초	식료품제조업(10)	5	36,283	■ 식료품 제조업(10) ■ 음료 제조업(11) ■ 섬유제품 제조업(13)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가구제조업(32) ■ 기타 제품 제조업(33)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 학적 제제 제조업 (21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 폐기물 수집 운반업(381) ■ 폐기물처리업(382)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변경	식료품제조업(10)	3	28,791		
	식료품제조업(1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2	7,49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3	31,664		
당초	전기장비 제조업(28)	1	6,401		
	섬유제품 제조업 (13)	1	1,721		
변경	전기장비 제조업(28)	–	–		
	섬유제품 제조업 (13)	2	8,122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38)		1	15,84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1	3,86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1	3,724		
기타 제품 제조업(33)		3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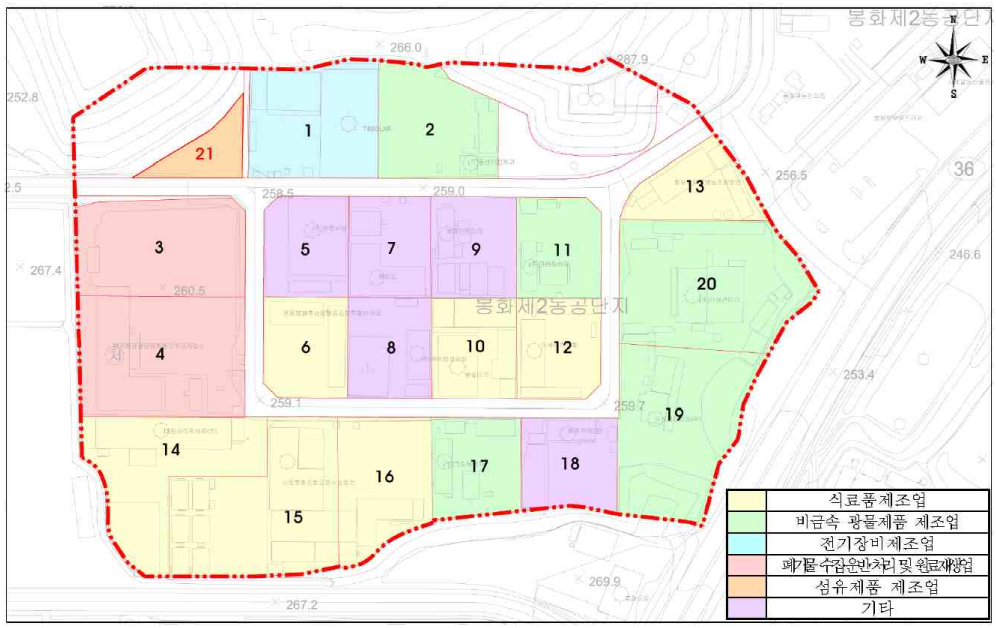
【별표 2】

용도별 구획 평면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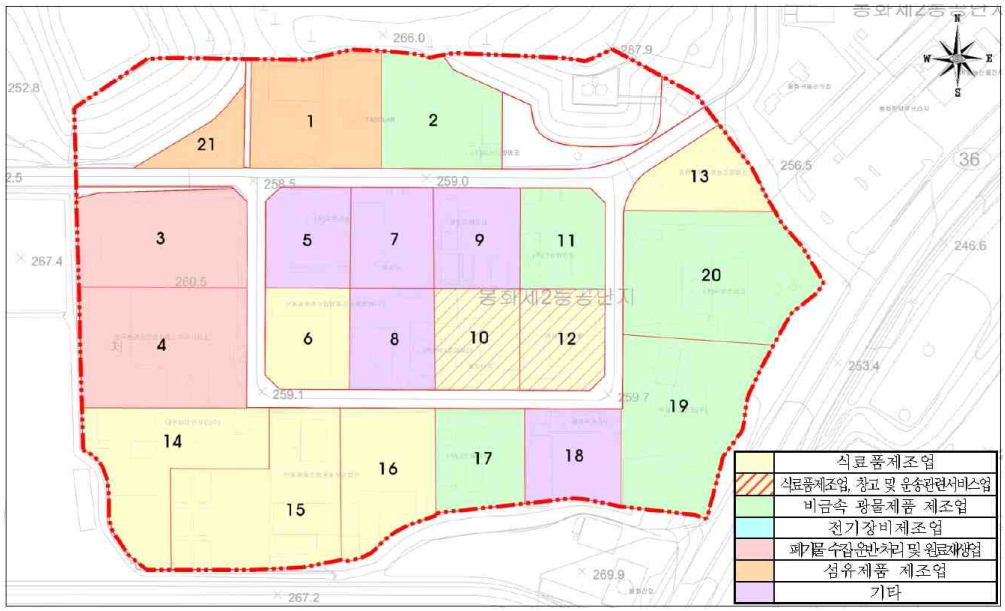


【별표 3】

업종별 배치계획도(기정)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 2020 - 234 호

영주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23.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다목 및 제6호라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일부를 변경(폐지)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학교)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1)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동양대학교	학교(대학)	풍기읍 동양대로 145	352,238	감) 89,861	262,377	경고 제444호 (92.12.22)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동양대학교	○ 학교시설 면적변경 - 면적 : 352,238㎡→ 262,377㎡ 감)89,861㎡	○동두천캠퍼스 개교에 따른 영주캠퍼스의 일부 학과의 이전 및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장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미사용 학교시설용지에 대해 일부를 변경 축소하여 토지이용 및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변경)

○ 총괄 면적표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352,238	감) 89,861	262,377	100.0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건축부지	본관, 신재관, 장영실관, 일신재, 자연과학관, 중앙도서관, 창업보육센터A · B, 학군단, 삼봉관, 박물관, 장인관, 연구동, 사임당, 인문사회관, 문화연구동, 정문수위실, 약용자원연구동, 전원기숙사	217,696	감) 76,530	141,166	53.8
운동장부지	실내체육관(운동장), 체육복지시설	32,743	감) 918	31,825	12.1
녹지부지	녹지	33,047	증) 10,455	43,502	16.6
주차장부지	주차장	16,195	감) 3,610	12,585	4.8
도로부지	도로	33,299	-	33,299	12.7
실습부지	실습장, 연구보조실습장	19,258	감) 19,258	-	0.0

○ 세부시설 면적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2,238	감) 89,861	262,377		
기정	1	본관	풍기읍 산법리 574번지 일원	11,920	-	11,920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2	신재관	풍기읍 산법리 574번지 일원	12,300	-	12,300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3	장영실관	풍기읍 산법리 523-1번지 일원	7,495	-	7,495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4	일신재	풍기읍 산법리 539번지 일원	14,980	-	14,980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5	자연과학관	풍기읍 산법리 574번지 일원	7,680	-	7,680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6	중앙도서관	풍기읍 산법리 558-3번지 일원	11,480	-	11,480	영고 제632호 (07.11.19)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	창업보육센터	풍기읍 산법리 583번지 일원	4,058	-	4,058	영고 제632호 (07.11.19)	
폐지	8	학군단	풍기읍 산법리 583-8번지 일원	35,586	감) 35,586	-	영고 제632호 (07.11.19)	
변경	9	삼봉관	풍기읍 산법리 583번지 일원	32,992	감) 1,730	31,262	영고 제632호 (07.11.19)	
폐지	10	박물관	풍기읍 산법리 583-7번지 일원	14,303	감) 14,303	-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11	창업보육센터	풍기읍 산법리 583번지 일원	6,770	-	6,770	영고 제632호 (07.11.19)	
폐지	12	장인관	풍기읍 산법리 558-3번지 일원	10,190	감) 10,190	-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13	연구동	풍기읍 산법리 523-1번지 일원	4,100	-	4,100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14	사임당	풍기읍 산법리 539번지 일원	9,780	-	9,780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15	인문사회관	풍기읍 산법리 583번지 일원	12,810	-	12,810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16	문화연구동	풍기읍 산법리 854번지 일원	6,111	-	6,111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17	실내체육관	풍기읍 산법리 583번지 일원	31,825	-	31,825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18	정문수위실	풍기읍 산법리 574번지 일원	420	-	420	영고 제632호 (07.11.19)	
기정	19	도로	풍기읍 산법리 574번지 일원	33,299	-	33,299	영고 제632호 (07.11.19)	
변경	20	녹지	풍기읍 산법리 583번지 일원	33,047	증) 10,455	43,502	영고 제632호 (07.11.19)	
변경	21	주차장	풍기읍 산법리 574번지 일원	16,195	감) 3,610	12,585	영고 제632호 (07.11.19)	
폐지	22	약용자원연구동	풍기읍 산법리 367번지 일원	7,843	감) 7,843	-	영고 제144호 (09.3.9)	
폐지	23	전원기숙사	풍기읍 산법리 528-1번지 일원	6,878	감) 6,878	-	영고 제144호 (09.3.9)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4	실습장	풍기읍 산법리 617-2번지 일원	10,355	감) 10,355	-	영고 제144호 (09.3.9)	
폐지	25	연구보조 실습장	풍기읍 교촌리 333번지 일원	8,903	감) 8,903	-	영고 제305호 (14.9.18)	
폐지	26	체육복지 시설	풍기읍 산법리 592-1번지 일원	918	감) 918	-	영고 제305호 (14.9.18)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학군단	• 시설 폐지 • 면적 : 35,586㎡ → 0㎡, 감) 35,586㎡	○ 동두천캠퍼스 개교에 따른 영주캠퍼스의 일부 학과의 이전 및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장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미사용 학교시설용지에 대해 일부를 변경 축소하여 토지이용 및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9	삼봉관	• 시설면적 변경 • 면적 : 32,992㎡ → 31,262㎡, 감) 1,730㎡	
10	박물관	• 시설 폐지 • 면적 : 14,303㎡ → 0㎡, 감) 14,303㎡	
12	장인관	• 시설 폐지 • 면적 : 10,190㎡ → 0㎡, 감) 10,190㎡	
20	녹지	• 시설면적 변경 • 면적 : 33,047㎡ → 43,502㎡, 증) 10,455㎡	
21	주차장	• 시설면적 변경 • 면적 : 16,195㎡ → 12,585㎡, 감) 3,610㎡	
22	약용자원연구동	• 시설 폐지 • 면적 : 7,843㎡ → 0㎡, 감) 7,843㎡	
23	전원기숙사	• 시설 폐지 • 면적 : 6,878㎡ → 0㎡, 감) 6,878㎡	
24	실습장	• 시설 폐지 • 면적 : 10,355㎡ → 0㎡, 감) 10,355㎡	
25	연구보조실습장	• 시설 폐지 • 면적 : 8,903㎡ → 0㎡, 감) 8,903㎡	
26	체육복지시설	• 시설 폐지 • 면적 : 918㎡ → 0㎡, 감) 918㎡	

다. 세부시설 조성계획(건축계획) 결정(신설) 조서

1)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신설)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신설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100% 이하	8층 이하

※ 건폐율·용적률은 영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였으며, 높이는 현황 건축물 층수를 고려하여 적용

2) 결정(신설)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 건축계획 결정(신설) - 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층수) 8층 이하	○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적정개발 밀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을 신규 결정함

3) 건축계획 결정 조서

구분	용도지역	명칭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비고 (세부시설번호)
1	자연녹지지역	본관	1,334.10	4,378.46	지상4층	1
2		신재관	3,520.39	13,492.52	지상5층	2
3		장영실관	1,117.51	4,519.32	지상4층	3
4		일신재	2,182.77	8,041.35	지상5층	4
5		자연과학과	1,539.67	6,415.00	지상4층	5
6		중앙도서관	2,265.09	12,811.00	지상5층	6
7		창업보육센터	1,148.62	6,086.28	지상8층	7
8		삼봉관	3,056.15	15,696.96	지상7층	9
9		창업보육센터	777.42	732.96	지상1층	11
10		연구동	1,246.22	5,104.00	지상4층	13
11		사임당	1,586.91	7,504.24	지상5층	14
12		인문사회관	2,275.14	9,211.27	지상4층	15
13		문화연구동	331.20	331.20	지상1층	16

구분	용도지역	명칭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비고 (세부시설번호)
14		실내체육관	1,671.18	2,923.47	지상3층	17
15		정문수위실	50.00	50.00	지상1층	18
16		본관부속동	173.98	307.22	지상1층	1
17		실습동 3동	307.11	305.67	지상1층	3
18		복지동	902.46	1,710.68	지상2층	4
19		공무원사관학교	2,260.53	8,226.40	지상4층	9
합 계			27,746.45	107,848.00	-	-

※ 건축계획 상세내용은 건축물대장에 따름

3.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서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영주시청 도시과(☏054-639-66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0-23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산1-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로구역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기정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부산~울진)	경산시 진량읍 일원	41,846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434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 산37-6	경산시 진량읍	0.9
변경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부산~울진)	경산시 진량읍 일원	35,609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434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 산37-6	경산시 진량읍	0.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산1-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경산1-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2009. 1. ~ 2020.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번호	동·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62,272	41,846	35,609		
1	신상리	434	도	6,000	4,552	4,433	경산시	
2	신상리	434-1	도	409	303	-	경산시	
3	신상리	544-3	도	3,790	3,789	3,777	경산시	
4	신상리	544-10	과	3,012	7	-	경상북도개발공사	
5	신상리	544-11	도	418	418	57	경산시	
6	신상리	557-2	도	303	303	283	경산시	
7	신상리	584-1	도	516	516	497	경산시	
8	신상리	584-2	도	11	11	-	경산시	
9	신상리	585-4	답	149	1	-	경상북도개발공사	
10	신상리	588-2	도	1,246	1,243	1,216	경산시	
11	신상리	588-5	답	613	1	-	경상북도개발공사	
12	신상리	588-8	도	8	7	-	경산시	
13	신상리	595-1	답	196	1	-	경상북도개발공사	
14	신상리	595-4	도	46	46	-	경상북도	
15	신상리	596-1	도	2,049	2,049	1,915	경산시	
16	신상리	596-2	도	41	41	-	경산시	
17	신상리	596-3	도	66	66	-	경산시	
18	신상리	1149-1	구	315	315	308	국(농림축산식품부)	
19	신상리	1149-6	잡	29	29	-	경상북도개발공사	
20	신상리	1151-3	구	75	75	73	국(농림축산식품부)	
21	신상리	1151-40	잡	12	12	-	경상북도개발공사	
22	신상리	1164-1	도	90	90	88	국(국토교통부)	
23	신상리	1165-3	구	380	380	379	국(농림축산식품부)	
24	신상리	1165-4	구	8	-	1	국(농림축산식품부)	

번호	동·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25	신상리	1165-5	구	115	115	98	국(농림축산식품부)	
26	신상리	산136-5	도	5,997	3,968	3,709	경산시	
27	신상리	산136-11	도	1,593	512	-	경산시	
28	신상리	산139	도	1,070	1,069	1,045	경산시	
29	신상리	산139-5	도	1,014	1,014	827	경산시	
30	신상리	산139-6	도	59	55	-	경산시	
31	신상리	산141-1	임	4,030	20	-	경상북도개발공사	
32	신상리	산141-3	도	1,741	1,720	1,630	경산시	
33	신상리	산144-3	도	7,420	7,420	7,342	경산시	
34	신상리	산145-4	도	193	189	108	경상북도	
35	신상리	산145-7	도	634	634	369	경상북도	
36	신상리	산145-8	도	1,042	1,042	-	경상북도	
37	신상리	산145-9	도	1,232	1,232	-	경상북도	
38	황제리	산37-6	도	9,572	7,184	7,052	경산시	
39	황제리	산37-14	도	123	123	73	경상북도	
40	황제리	산37-15	도	158	158	-	경산시	
41	황제리	산37-16	도	153	34	-	경산시	
42	황제리	산37-17	도	436	436	329	경상북도	
43	황제리	산37-18	도	136	136	-	경상북도	
44	황제리	산37-21	도	10	10	-	경산시	
45	황제리	산37-22	도	331	331	-	경상북도	
46	황제리	산37-23	도	188	188	-	경상북도	
47	황제리	산38-6	임	5,243	1	-	경상북도개발공사	

7. 도로구역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기간 및 열람 : 열람장소에 비치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경상북도개발공사(054-650-3134)

경상북도 도로철도과(054-880-3983)

※ 첨부서류 : 1천5백분의 1 지형도(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olit.go.kr)열람이 가능하며 도면게재는 생략합니다. 끝.

◈◈◈

경상북도 공고 제 2020 - 1406 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가지원지방도	**노 선 명**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하남-영양)
공사의 종류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에 따른 통로박스 설치		
구 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30-32번지 일원 (L=15m)		
공사시행장소	상 동		
착수예정일	2020년 6월	**준공예정일**	2020년 12월 31일
이유 :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에 따른 이용객 편의를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통로박스(4.0×2.5) 설치			

경상북도공고 제 2020 - 1407 호

도로공사시행 허가 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가지원지방도	**노 선 명**	제67호선 (통영~칠곡선)
공사의 종류	대가야관광 순환도로 정비사업(L=0.963km)		
구 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333-6번지 일원		
공사시행장소	상 동		
착 수 일	2020년 07월	**준공예정일**	2022년 05월 31일
이유 :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국지도67호선의 도로폭원 확폭 및 개설을 위한 대가야관광 순환도로 정비공사			

경상북도 공고 제 2020 - 1408 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도	**노 선 명**	국도14호선 (거제-포항)
공사의 종류	국도14호선 어일2리 입구 교차로 설치		
구 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1295-786번지~1295-777번지 일원 (L=200m)		
공사시행장소	상 동		
착수예정일	2018년 04월	**준공예정일**	(당초)2020년 07월 31일 (변경)2020년 10월 30일
변경사유 : 경찰서 협의의견 반영 및 전기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경상북도 공고 제 2020 - 1411 호

박물관 등록 공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등 록 내 용 -

명칭	등록 일자	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자 (대표자)	종류 및 유형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2020. 7.20.	경북-사립12 -2020-03	경주시 보문로 132-22(북군동66)	구주령 (구주령)	제1종 전문박물관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15호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기 조성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②)

나.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76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경북도청 환동해 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

전화 : 054-880-7640 Fax 054-246-9055, 이메일 : yunlet@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업무소관 부지사”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를 “2025년 11월 4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업무소관 부지사-----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 ---- 2025년 11월 4일까지로 --. ---------- ---------- ---------- ---------- ----------.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16호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과 (재)경북장학회의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평생교육법 개정내용 반영 및 평생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규정 명확화(안 제18조)

- 진흥원 법인화에 따라 기존 지정(위탁)관련 내용을 설치(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

다. 평생교육진흥원 세부운영 사항에 대한 조항은 별도의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안 제19조～제24조)

- 업무, 지정·운영 절차, 운영 및 경비조달, 직원배치, 조직 및 시설, 지정취소, 운영규정에 관한 조항 삭제

라. 학습자 안전 보험가입에 관한 법령 일치(안 제6조)

마.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 반영(안 제10조3항)

- 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전문가 또는 관계자 포함

바. 포상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28조)

-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가. 「평생교육법」 제12조, 제20조, 제28조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 054-880-4572 Fax 054-880-4579, 이메일 : dudfks@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4호 중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 및 전문가”를 “공무원 또는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관계자”로 한다.

제18조 앞의 “제3장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을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① 도지사는「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제3장 보칙”으로 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도 및 도내 시·군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 개정규정은 2021.1.1.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란 도지사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	3. “평생교육진흥원” 이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지,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1. ---------- 공무원 또는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관계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삭 제〉
제18조(설치)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제18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현 행	개 정 안
있다.	
② 진흥원은 제1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20조(운영 및 경비조달) 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지정·운영절차 등) ①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등기부 등본 및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계획 ② 도지사가 진흥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공공성, 대표성, 전문성, 접근성, 연계성, 장래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진흥원에는 제1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필요시 도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는 영 제22조 관련 “별표 2” 의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기관 및 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치 기준에 따라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에는 제19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도지사의 지시에 위반한 때	〈삭 제〉
제2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4장 보 칙	〈삭 제〉
〈신 설〉	제3장 보 칙
〈신 설〉	제28조(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도 및 도내 시·군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 (생 략)	제29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관 련 법 령 발 췌

□ **평생교육법**

제12조(시 · 도평생교육협의회) ④ 시 · 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 · 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

를 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17호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경북장학회를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한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단 명칭변경 (제명, 안 제3조)

- 제명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재단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 내용 변경(안 제1조, 제4조)

- 평생교육 진흥 사업 추가, 인재육성 사업과 구분

다. 진흥원 이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7조)

라. 임원 및 이사회 설치 내용 규정(안 제8조)

- 임원 임기, 임면, 구성 및 이사회 구성, 기능 등

마. 조직 정비(안 제9조)

- 조직 및 시설에 관한 조문 이관(평생교육진흥조례), 세부조직형태 및 직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

바. 관련법 근거 명시 및 불부합 조항 수정·삭제

- 법인 설립 근거(평생교육법), 임원 구성 근거(공익법인법), 재정지원 근거(지방출자출연법) 등 명시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4571 Fax 054-880-4579, 이메일: smilea31@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며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 우수 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정관)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의 준칙 등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 제3조에 따른다.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 관련 사업
2. 학숙 건립ㆍ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
3. 그밖에 진흥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은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와 시·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ㆍ기부금ㆍ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등) ① 진흥원의 임원은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임면,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진흥원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필요시 도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ㆍ정원ㆍ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등) ① 도지사는 출연한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등) 이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0-1418호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문자해득교육 정의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평생교육법」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정의 관련 법령 조문 일치(안 제2조제1호)

나.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다. 문해교육 추진주체에 관한 자구 수정(안 제6조제1항)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관련법령

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 제39조의2 제2항, 제3항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교육정책과
- 전 화 : 054-880-4541, Fax 054-880-4579,
- 이메일 : jhn8189@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문해교육” 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 을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 으로, “실시하는” 을 “하는” 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①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④ 그 밖에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해교육협의” 를 “문해교육협의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 하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①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④ 그 밖에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추진주체 등)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협의·조정을 위하여 문해교육협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주체 등) ① ---------- ---------- ---------- ---------- ---------- 문해교육협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발 췌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시·도문해교육센터) ① 시·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경주시 고시 제2020－210호

경주 효동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632-63번지 외 5필지 “경주 효동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청에 대하여 「온천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경주 효동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23.

경 주 시 장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내용

가. 명 칭 : 경주 효동온천 온천공보호구역

나. 위 치 :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632-63번지 일원

다. 면 적 : 9,515㎡(6필지)

라. 적정양수량 : 400톤/일

마. 수 온 : 26.2℃

바. 수 질 : pH 8.74 알칼리성, Na-HCO3형

사. 심 도 : 700m

2. 관계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열람장소 : 경주시청 도시계획과(☏054-779-642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음.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54-779-642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온천공보호구역 대상지 토지현황〉

주소	면 적(㎡)		지목	용도지역
	전체	해당		
양남면 효동리 1036-4	7,060	2,292	체	계획관리지역
양남면 효동리 1036-13	950	217	체	계획관리지역
양남면 효동리 1038-11	52,416	5,784	체	계획관리지역
양남면 효동리 1038-12	520	413	체	계획관리지역
양남면 효동리 1632-33	11,100	449	체	계획관리지역
양남면 효동리 1632-63	360	360	임야	계획관리지역
계		9,515		

영천시 고시 제2020 - 156호

영천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최무선과학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금호읍 원기리 27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최무선과학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 7. 23.

영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최무선 과학관	과학관	금호읍 원기리 277번지 일원	43,135	증)10,853	53,988	영천시 고시 제40호 (2012. 7. 9)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T.054-330-6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시 공고 제2020 - 1368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안동시에서 시행하는 『도로:풍산중로(1-5,3-1)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3일

안 동 시 장

1. 사업시행자 : 안동시장

2. 사 업 명 : 풍산중로(1-5,3-1)개설공사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안동시 풍산읍 일원

나. 사업내용 : 도로개설 L=570.0m, B=6.0~20.0m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 07. 23. ~ 2020. 08. 06.(15일간)

6. 열람장소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팀 (☎ 054-840-5406)

7. 이의신청

보상계획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상시기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나. 보상시기: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절차 :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입금

나. 보상가격의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양식에 의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보상계획 및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제외)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팀(☎ 054-840-5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중로(1-5, 3-1), 소로(3-12)]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리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1	안교	135-2	135-9	잡	34	34	공	안동시			
2	〃	118-3	118-6	답	242	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5-9 논현빌리지 301	남○규외1			
3	〃	118-2	118-5	답	783	783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38 대곡사계절타운 301동 1801호	김○호외1			
4	〃	492-2	492-2	답	161	161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98(성북동)	이○자외1			
5	〃	1403-4	1403-4	구	22,020	674		농림축산식품부			
6	〃	491-4	491-7	전	1,154	1,154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778	배○직외1	근저당	동안동농업협동조합	
7	〃	1403-8	1403-8	도	2,380	95		농림축산식품부			
8	〃	490-2	490-9	답	1,134	1,134	안동시 만운리 326	권○수			
9	〃	312-1	312-4	답	1,098	1,098	안동시 풍산읍 평지길 105	이○걸외1			
10	〃	481-7	481-8	대	191	191		한국농어촌공사			
11	〃	1403-5	1403-5	도	6,294	668		농림축산식품부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리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류	성명	
12	〃	481-7	481-9	대	30	30		한국농어촌공사			
13	〃	480-3	480-3	도	23	6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480-1	제일주조 주식회사			
14	〃	480-2	480-2	도	288	28	소산동	김○동			
15	〃	479-2	479-2	도	212	82	안동군 풍산면 마애동 150	이○인			
16	〃	314-9	314-9	도	13	13		국토교통부			
17	〃	314-2	314-15	답	611	611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358	정○묵			
18	〃	314-1	314-14	전	197	197	안동시 중평길 39, 103동 1401호 (용상동, 안동세영리첼아파트)	심○용외1	근저당 지상권	안동행복신용협동조합	
19	〃	311	311-1	답	169	169	안동시 중평길 39, 106동 101호(용상동,안동세영리첼아파트)	김○현외1	근저당	안동시봉화축산업협동조합	
총 계					37,034	7,370					

2.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중로(1-5, 3-1), 소로(3-12)]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시	읍리	지번					주소	성명	
1	안동	풍산 안교	118-3	창고	컨테이너	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5-9 논현빌리지301	남○규 외 1인	
2	안동	풍산 안교	118-2	창고	판넬	12	㎡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438 대곡사계절타운 301동 1801호	김○승 외 1인	
3	안동	풍산 안교	490-4	펜스	능형망펜스	58	m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23-4	주식회사 세림주택	
4	안동	풍산 안교	481-7	관정		1	개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창고		104	㎡			
				담장	콘크리트벽돌 H=1.3~1.6m	64	m			
				담장	철재, 벽돌 H=1.25m	8	m			

안동시 공고 제2020 - 1369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안동시에서 시행하는 『송현소로(1-18)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3일

안 동 시 장

1. 사업시행자 : 안동시장

2. 사 업 명 : 송현소로(1-18) 개설공사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안동시 용상동 일원

나. 사업내용 : 도로개설 L=140.0m, B=10.0m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 07. 23. ~ 2020. 08. 06.(14일간)

6. 열람장소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팀 (☎ 054-840-5403)

7. 이의신청

보상계획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상시기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나. 보상시기: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절차 :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입금

나. 보상가격의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양식에 의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보상계획 및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제외)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팀(☎ 054-840-5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류	성명	
1	송현	365-4	365-7	답	24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0길 37,106동1805호(범어동)	조○영 외 1인			
2	송현	365-6	365-6	답	90	90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977-5, 608동203호(용상동,주공본가타운)	남○섭			
3	송현	399-1	399-7	답	9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0길 37,106동1805호(범어동)	조○영 외 1인			
4	송현	1063-12	1063-34	구	817	817		기획재정부			
5	송현	1063-13	1063-36	구	91	91		기획재정부			
6	송현	1082	1082-2	도	147	147		농림축산식품부			
7	송현	1082-1	1082-3	도	37	37		농림축산식품부			
8	송현	398-2	398-2	도	43	11	공	안동시			
9	송현	377-2	377-2	도	93	1	공	안동시			
총 계					1,351	1,227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시	동	지 번					주 소	성명	
1	안동	송현	1063-34	양수장	블럭조	8.8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0길37, 106동1805호(범어동)	조○영 외 1인	

안동시 공고 제2020-1400호

안동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 공사완료 공고

안동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23일

안 동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1319-91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

○ 명 칭 : 밭농업 로봇 연구실증센터 신축공사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로봇융합연구원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39(한국로봇융합연구원)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8,070㎡

나. 금회 사업시행 면적 : 8,070㎡

- 연구시설(지하1층, 지상3층, 철골조) 1식 등

- 연면적 : 2,912.34㎡, 건축면적 : 1,285.22㎡

5. 시행기간 : 2019. 04. 15. ~ 2020. 12. 31.

6. 공사 완료일 : 2020. 06. 25.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540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영양군 공고 제2020-579호

영양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영양군 영양읍 전곡리 일원의 영양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3.

영 양 군 수

1. 군계획시설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영양군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영양군 영양읍 전곡리 406-3번지 일원	81,887	영양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22년 12월

2. 열람기간 : 2020. 7. 23. ~ 2020. 8. 13.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양군청 지역경제과 도시담당, 환경보전과 환경시설담당

4.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양군청 지역경제과 도시담당(054-680-6341) 또는 환경보전과 환경시설담당(054-680-6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서류 및 도면은 영양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편 입 용 지 조 서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변경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전곡리	277-4	전	312	312	영양군					
2	전곡리	278-1	임	92	92	영양군					
3	전곡리	282-1	유	22	22	영양군					
4	전곡리	283	임	128	128	영양군					
5	전곡리	283-5	임	330	330	영양군					
6	전곡리	283-6	임	33	33	영양군					
7	전곡리	283-7	임	364	364	영양군					
8	전곡리	285-2	임	994	994	김미옥 (사유지)	성북구 보문로13다길 7-10, 102호				
9	전곡리	290-13	전	133	133	영양군					
10	전곡리	290-14	전	43	43	영양군					
11	전곡리	290-15	전	21	21	영양군					
12	전곡리	290-17	전	279	279	영양군					
13	전곡리	290-18	임	1,982	1,982	영양군					
14	전곡리	291-1	답	18	18	영양군					
15	전곡리	291-2	답	222	222	영양군					
16	전곡리	297-1	전	1,066	1,066	영양군					
17	전곡리	297-5	임	361	361	영양군					
18	전곡리	298-1	전	15	15	영양군					
19	전곡리	301-6	전	501	501	영양군					
20	전곡리	301-7	전	149	149	영양군					
21	전곡리	304-2	임	173	173	영양군					
22	전곡리	304-3	임	272	272	영양군					
23	전곡리	306	답	844	844	영양군					
24	전곡리	306-1	답	230	230	영양군					
25	전곡리	306-2	답	410	410	영양군					
26	전곡리	307	답	140	140	영양군					
27	전곡리	307-1	답	253	253	영양군					
28	전곡리	308-1	임	904	904	영양군					
29	전곡리	308-2	임	760	760	영양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변경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0	전곡리	308-3	임	399	399	영양군					
31	전곡리	308-4	임	112	112	영양군					
32	전곡리	308-5	임	264	264	영양군					
33	전곡리	308	임	235	235	영양군					
34	전곡리	309	전	961	961	영양군					
35	전곡리	309-1	전	166	166	영양군					
36	전곡리	310	구	159	159	조두희 (사유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신촌길 51-9	서문경 농업협 동조합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신촌길 51-9	근저당권자	
37	전곡리	311	구	5	5	영양군					
38	전곡리	311-1	구	21	21	영양군					
39	전곡리	312	구	66	66	영양군					
40	전곡리	313-1	전	247	247	영양군					
41	전곡리	313-2	전	10	10	영양군					
42	전곡리	313-3	전	172	172	영양군					
43	전곡리	313-4	전	16	16	영양군					
44	전곡리	314	전	193	193	영양군					
45	전곡리	314-1	전	222	222	영양군					
46	전곡리	318-2	임	136	136	영양군					
47	전곡리	318-3	임	552	552	영양군					
48	전곡리	318-4	임	175	175	영양군					
49	전곡리	350	전	33	33	영양군					
50	전곡리	351	답	215	215	영양군					
51	전곡리	351-1	답	156	156	영양군					
52	전곡리	351-2	답	307	307	영양군					
53	전곡리	352	전	53	53	영양군					
54	전곡리	352-1	전	106	106	영양군					
55	전곡리	353-1	임	17	17	영양군					
56	전곡리	353-2	임	1,323	1,323	영양군					
86	전곡리	393	전	916	916	영양군					
87	전곡리	396-1	임	1,491	1,491	영양군					
88	전곡리	396-2	전	3,663	3,663	영양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변경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9	전곡리	397	전	142	142	영양군					
90	전곡리	398	전	228	228	영양군					
91	전곡리	399	전	463	463	영양군					
92	전곡리	400	임	661	661	영양군					
93	전곡리	401	임	364	364	영양군					
94	전곡리	402	임	106	106	영양군					
95	전곡리	403	임	195	195	영양군					
96	전곡리	404	답	198	198	영양군					
97	전곡리	405	전	2,231	2,231	영양군					
98	전곡리	405-1	임	1,058	1,058	영양군					
99	전곡리	405-4	임	2,118	2,118	영양군					
100	전곡리	405-5	구	253	253	영양군					
101	전곡리	406	임	3,439	3,439	영양군					
102	전곡리	406-1	임	1,037	1,037	영양군					
103	전곡리	406-2	임	588	588	영양군					
104	전곡리	406-3	임	8,490	8,490	영양군					
105	전곡리	441-12	구	1,898	1,898	영양군					
106	전곡리	441-13	구	160	160	영양군					
107	전곡리	441-14	구	226	226	영양군					
108	전곡리	441-15	구	139	139	영양군					
109	전곡리	441-16	구	98	98	영양군					
110	전곡리	441-17	구	9	9	영양군					
111	전곡리	441-18	구	194	194	농수산부					
112	전곡리	441-4	구	68	68	영양군					
113	전곡리	441-5	구	271	271	영양군					
114	전곡리	441-6	구	322	322	영양군					
115	전곡리	441-7	구	138	138	영양군					
116	전곡리	441	구	38,092	168	농수산부					
117	전곡리	475	도	56	56	국토교통부					
118	전곡리	475-1	도	43	43	국토교통부					
119	전곡리	478-1	도	282	282	국토교통부					
120	전곡리	478-3	도	39	39	국토교통부					
121	전곡리	478-4	도	232	232	국토교통부					
122	전곡리	478-5	도	119	119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변경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23	전곡리	478-6	도	82	82	국토교통부					
124	전곡리	478-8	임	210	210	영양군					
125	전곡리	478-9	임	448	448	영양군					
126	전곡리	산126-1	구	196	196	영양군					
127	전곡리	000	가	자료없음	1,968	자료없음					
소계				126,335	81,877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0 - 4호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수시공개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박의식 전)경북체육회 사무처장 등 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경상북도		직위	(전)사무처장		성명	박의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30,591	2,205	0	32,796	
본인	답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직리 18-1번지 2,756.00㎡	30,591	2,205	0	32,796	
▶ 건물(소계)			1,204,135	74,000	75,467	1,202,668	
본인	아파트(전세(임차)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시지2차사월보성 건물 84.99㎡	150,000	0	0	15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4단지아파트 건물 84.81㎡	524,000	74,000	0	598,000	
배우자	다가구주택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대지 238.10㎡ 중 119.05㎡ 건물 408.78㎡ 중 204.39㎡	254,261	0	0	254,261	
배우자	연립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대지 0.00㎡ 건물 54.61㎡ (대지 61.16㎡ 감소)	246,467	0	75,467	171,000	
모	상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대지 11.67㎡ 건물 21.70㎡	29,407	0	0	29,407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1,202	100	0	1,302	
본인	자동차	2002년식 SM5 배기량(2,000cc)	418	0	0	418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이스케이프 배기량(2,500cc)	784	0	0	784	
본인	자동차	2014년식 BMW320d 배기량(1,955cc) 증가	0	100 (100)	0	100	
▶ 예금(소계)			437,551	40,445	72,976	405,020	
본인		(주)KB손해보험 50,657(994 증가), 농협은행	122,060	39,682	38,606	123,136	생활비 지출 등

		16,600(862 증가), 대구은행 14,349(8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7,688(772 감소), 신한은행 28, 에이비엘생명보험 3,814					
배우자		(주)KB손해보험 8,538(321 증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1,802(140 증가),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0(28,000 감소), 농협은행 0(12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9,360(241 증가), 신한금융투자(주) 75(60 감소), 신한은행 0(683 감소), 한국투자증권 7,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42,000, 현대해상화재보험 1,108(60 증가)	100,883	762	28,755	72,890	
모		농협중앙회 174,163(1 증가), 대구은행 6,291(427 감소), 새마을금고 438,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8,071(5,188 감소), 우체국 1, 한국투자증권 30	214,608	1	5,615	208,994	
▶ 증권(소계)			**3,600**	**56**	**588**	**3,068**	
배우자	상장주식	삼성전자 1주(1주 증가), 제이씨케미칼 600주	3,600	56	588	3,068	주가변동
▶ 채무(소계)			**246,901**	**3,012**	**7,100**	**242,813**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150,213(4,634 감소)	154,847	2,466	7,100	150,213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82,054, 신한은행 546(546 증가)	82,054	546	0	82,6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임대보증금	10,000	0	0	1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장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430,178**	**113,794**	**141,931**	**1,402,041**	**증감액: -28,137천원 (가액변동: 75,617천원)**

소속	경상북도 포항시	직위	시의원	성명	안병국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592,000	
본인	임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 산 137번지 66,644.00㎡ 중 16,661.00㎡	88,200 (88,200)	
본인	임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리 산 40번지 19,836.00㎡ 중 9,918.00㎡	135,000 (135,000)	
본인	목장용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리 190-1번지 19,108.00㎡ 중 9,554.00㎡	130,000 (130,000)	
배우자	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홍계리 163-2번지 601.00㎡	81,000 (81,000)	
배우자	임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 산 137번지 66,644.00㎡ 중 16,661.00㎡	88,200 (88,200)	
배우자	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공수리 196번지 1,917.00㎡	69,600 (69,600)	
▶ 건물(소계)			187,600	
본인	아파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삼양비젼맨션 건물 132.00㎡	160,000 (160,000)	
모	단독주택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 송동리 대지 136.00㎡ 건물 89.17㎡	27,600 (27,6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2,700	

배우자	자동차	2012년식 아반떼 배기량(1,591cc)	2,700 (16,000)	
▶ 예금(소계)			**86,681**	
본인		(주)KB손해보험 3,650, DB생명보험(주) 7,371, SK증권 1, 국민은행 20, 농협손해보험 3,570, 농협은행 182, 농협중앙회 30,692, 산림조합중앙회 225, 삼성화재해상보험 4,000, 새마을금고 210, 수협중앙회 49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0,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408, 우체국 6,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5,424	56,352	
배우자		SBI저축은행 10, 교보생명보험 1,782, 농협중앙회 1,157, 동양생명보험 897, 수협중앙회 11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305, 신한생명보험 2,837, 중소기업은행 106,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2,283	22,496	
모		(주)KEB하나은행 2, 농협중앙회 3,07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3	3,094	
장남		농협중앙회 35, 중소기업은행 181	216	
장녀		NH투자증권 653, 농협중앙회 1,016, 삼성증권 47, 우리은행 124	1,840	
차녀		NH투자증권 205, 농협중앙회 903, 삼성증권 69, 우리은행 1,506	2,683	
▶ 증권(소계)			**20**	
차녀	상장주식	KODEX 삼성그룹 1주, KODEX 바이오 1주, 미래에셋대우 1주	20	
▶ 채무(소계)			**423,900**	
본인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49,900, 새마을금고 134,0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0,000	223,900	
배우자	금융채무	수협중앙회 200,000	200,000	
총 계			**445,101**	

소속	경상북도 안동시	직위	시의원	성명	윤종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282,100	
본인	아파트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칠곡코스모스한양아파트 건물 59.83㎡	163,000 (163,000)	
본인	다가구주택(전세(임차)권)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밍크빌 대지 187.90㎡ 건물 327.63㎡	27,000	
본인	단독주택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대지 265.00㎡ 건물 155.87㎡	37,100	
모	아파트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현대아파트 건물 59.40㎡	55,000 (55,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41,500	
모	자동차	2011년식 렉서스 ES350 배기량(2,500cc)	15,350 (50,272)	
모	자동차	2018년식 토요타 캄리 하이브리드 배기량(2,487cc)	26,150 (38,636)	
▶ 예금(소계)			144,079	
본인		농협은행 3,385, 농협중앙회 1,833, 신한은행 2, 중소기업은행 20, 한국카카오은행(주) 4,257	9,497	
부		(주)KB손해보험 1,035, 국민은행 54, 농협은행 32, 농협중앙회 7,223, 우리은행 48, 중소기업은행 20	8,412	
모		KB증권 35, 농협생명보험 74,400, 농협은행 5,000, 농협중앙회 4,230, 삼성생명보험 38,0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6, 케이디비생명보험 4,469	126,170	
▶ 채무(소계)			13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칠곡코스모스한양아파트	120,000	
모	금융채무	농협생명보험 10,000	10,000	
총 계			337,679	

소속	경상북도 구미시	직위	시의원	성명	김영길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639,787**	
모	임야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산 45번지 23,669.00㎡	92,546	
모	답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97번지 2,634.00㎡	93,507 (93,507)	
모	답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96번지 2,834.00㎡	85,587 (85,587)	
모	전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95번지 278.00㎡	8,646 (8,646)	
모	전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399-4번지 545.45㎡	17,836	
모	유지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399-3번지 280.99㎡	8,964	
모	답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399-2번지 3,004.95㎡	101,267	
모	답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399-1번지 2,651.23㎡	89,346	
모	답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118-2번지 2,505.78㎡	84,445	
모	전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117번지 574.00㎡	18,942	
모	전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117-2번지 395.00㎡	13,035	
모	전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110번지 820.00㎡	25,666	
▶ 건물(소계)			**668,044**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e편한세상 시흥 센텀하임 건물 84.77㎡	383,200 (383,200)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영남아파트 건물 42.96㎡	145,000 (145,000)	

모	단독주택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대지 625.00㎡ 건물 119.85㎡	56,000	
모	기타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대지 406.00㎡ 건물 171.00㎡	16,445	
모	기타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대지 2,013.00㎡ 건물 636.80㎡	67,399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46,000**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12,000 (12,000)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싼타페 배기량(1,995cc)	13,500 (13,500)	
모	자동차	2005년식 그랜저 배기량(2,656cc)	3,500 (3,500)	
모	자동차	2006년식 포터Ⅱ 배기량(2,497cc)	3,500 (3,500)	
장남	자동차	2020년식 싼타페 배기량(1,995cc)	13,500 (13,500)	
▶ 예금(소계)			**187,172**	
본인		(주)KB손해보험 93,107, 국민은행 681, 농협중앙회 38,303, 새마을금고 1	132,092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0, 교보증권 3, 농협은행 5,825, 농협중앙회 926,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 우리은행 4,608	11,383	
모		국민은행 168, 농협생명보험 12,200, 농협은행 51, 농협중앙회 9,697, 산림조합중앙회 217,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새마을금고 1,877	24,213	
장남		국민은행 18,389, 농협중앙회 1, 부산은행 122, 씨티은행 8, 한국카카오은행(주) 5, 한국투자증권 84	18,609	
장녀		농협중앙회 1, 중소기업은행 544, 한국카카오은행(주) 330	875	
▶ 증권(소계)			**121**	

배우자	상장주식	현대바이오 12주	121	
▶ 채무(소계)			1,653,897	
본인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93,213	93,213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영남아파트	75,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e편한세상 시흥 센텀하임	250,000	
모	금융채무	농협생명보험 7,000, 농협은행 47,700, 농협중앙회 1,180,984	1,235,684	
총 계			-112,773	

소속	경상북도 울진군	직위	군의원	성명	신상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9,960	
본인	전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710-1번지 415.00㎡	9,960 (9,960)	
▶ 건물(소계)			36,223	
본인	사무실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건물 18.00㎡	414 (414)	
본인	근린생활시설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대지 438.00㎡ 건물 83.60㎡	35,809 (35,809)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9,989	
배우자	자동차	2017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배기량(2,497cc)	9,989 (9,989)	

▶ 예금(소계)			**66,252**	
본인		농협중앙회 2,802, 새마을금고 95, 수협중앙회 4,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4,088	16,989	
배우자		(주)KB손해보험 239, 농협중앙회 535,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50, 새마을금고 1,082,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4,917, 수협중앙회 1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7,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 3,031,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9,47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9,793	49,263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3,040**	
본인		우체국 3,040	3,040	
▶ 채무(소계)			**156,627**	
본인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16,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8,920	34,920	
배우자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8,389, 새마을금고 78,663, 신한카드 24,855,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9,800	121,707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차녀		고지거부	-	기타
총 계			**-31,163**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0-5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23일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20. 07. 23. ~ 2020. 08. 06.

2. 공고방법 : 경상북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table>
<tr><td colspan="2">가. 제 목</td><td colspan="7">운행제한(과적)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td></tr>
<tr><td rowspan="2">나.당사자</td><td>성 명</td><td colspan="7">최 경 *</td></tr>
<tr><td>주 소</td><td colspan="7">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309번길 51-6, 라동 303(영진빌라)</td></tr>
<tr><td colspan="2">다. 위반내용</td><td colspan="7">2016.09.09.(화) 국도 25호선(상주 내서 신촌)을 운행하면서 「도로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중 축중량 1.75톤을 초과(기준 : 10톤, 운행 : 11.75톤)</td></tr>
<tr><td colspan="2">라. 압류재산</td><td colspan="7">2020년 07월 03일 재산(자동차)압류 : 89마0591
(공고일 기준 체납액 : 금777,000원)</td></tr>
<tr><td colspan="2">마. 법적근거</td><td colspan="7">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제1호</td></tr>
<tr><td colspan="2" rowspan="3">바. 기 타</td><td rowspan="3">문의처</td><td>기관명</td><td>경상북도</td><td>부서명</td><td>남부건설사업소</td><td>담당자</td><td>김민영</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3" rowspan="2">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td><td>전화번호</td><td>054)880-8255</td></tr>
<tr><td>모사전송</td><td>053)323-5991</td></tr>
</table>

◈◈◈

도지사 지시사항

- 2020. 7. 19.(일) 긴급비상간부회의 시 -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2020 - 008	○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관련 숲 행정력 집중** - 군위군 등 현지 출장(근무)을 통해 주민들에게 통합 신공항 이전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 -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각종 단체 연계협력 추진	통합신공항 추진단 (전 부서)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